**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**

수입인지

1000원

사건번호: 20 타경 부동산강제(임의) 경매
신청인: ㅇㅇㅇ

(주소)
피신청인:
 (주소)

**신청취지**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**신청이유**
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(매수인)은 20. 매각대금을 낸 후 피신청인 (囗채무자, 囗소유자, 囗부동산 점유자)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,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신청인(매수인)
(서명 또는 날인)
(전화번호: )

**ㅇㅇ지방법원(○○지원) 귀중**

※ 유의사항
1.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채무자·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괄호안 네모(□)에는 피신청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표시(回)하시기 바랍니다(예를 들어피신청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경우에는 "채무자, 소유자, 부동산 점유자”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).
3. 당사자(신청인+피신청인) 수×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시고, 송달료 납부서(법원제출용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별지
**부동산의 표시**<예시>
1.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동 100
대 100m²
2.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동 100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길 25
위 지상
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
50㎡. 끝.